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7. 12 .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실효성이 낮고 불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축소·폐지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(안 제30조)

1)「지방세법」제266조 제3항은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를 50% 감면하면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대상사업 및 감면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.

2) 현재「성주군세조례」로 정하고 있는 것을 「성주군세 감면조례」(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신설)로 이관함에 따라 규정이 불필요 하여 삭제함.

3. 참고사항

가. 근거법령 :「지방세법」제266조 제3항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1). 개정조례안 : 붙임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3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성주군 조례 호

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(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)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이 유
제30조(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) ①법제266조제3항에서 "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"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 1. 구매·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2. 보관, 가공,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3. 생산 및 검사 사업용 부동산 4.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 대한 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	<삭 제>	○현재「성주군세조례」로 정하고 있는 것을 「성주군세 감면조례」로 이관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코자 함.